

선 람	기 관 의 장



제36호(호외) 2021. 9. 10.(금)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716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광양시 공고 제2021-1723호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

광양시 공고 제2021-1724호 광양시 보행안전 및 환자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1944, 행정1945)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 취지

-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 21. 1. 12. 별도 제정됨(' 21. 7. 13. 시행)
-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조례로 위임해왔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까지 「지방보조금법」에 규정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의 용어 개정

- (현행)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개정)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3조~제30조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가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 규정 내용 삭제

○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지방보조사업 절차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중요재산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 (안 제9조 ~ 제2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9. 10. ~ 2021. 9. 30.(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 전화 061-797-2703, FAX 061-797-2574, E-mail joilkwonnim@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해 지방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2.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5. 시민단체 대표
6.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자 단체 대표 등
7.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광양시 공고 제2021-1723호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근거하여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제16조” → “제21조”
-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기준 마련 (안 제2조)
 - “주민의” → “18세 이상의 주민”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9. 10. ~ 2021. 9. 30.(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4층 감사실(우 57785)
- 전화: 061-797-2705
- 팩스: 061-797-4186(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kimks4@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하고,
“주민의”를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 -----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 ----- ----- ----- -----18세 이상의 주민-----.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 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 보행환경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 변경
- 광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조의2) 신설

3. 예고기간: 2021. 9. 10. ~ 9. 3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30일까지 광양시장 (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black5103@korea.kr

2)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3) 팩 스: 061-797-2591

라. 문의처: 광양시 교통과(전화: 061-797-3464)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광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광양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법 제7조</u>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u>법 제7조제2항</u>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생략) <u><신설></u>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u>법 제7조의2</u>----- ----- -----. ② ----- ----- <u>법 제7조의2제2항</u> -----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광양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u> 시장은 <u>법 제8조의3</u>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광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u>”(이하 “<u>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 1. <u>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u> 2. <u>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② <u>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u>